

의안번호	2210416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6.5.
추계번호	25D2801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9조의2(선고지연에 대한 보상)	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9조의2(선고지연에 대한 보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법원의 선고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현행법 제199조¹⁾는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간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,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, 손실 발생이 확인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 선고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 - 개정안은 선고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

1) 「민사소송법」 제199조(종국판결 선고기간)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. 다만,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.

정하고 있으며, 선고지연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 및 피해금액을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□ 참고로, 2020~2024년 5년간 판결 선고기간인 5개월이 지난 후 판결된 선고의 수는 다음과 같음

[표] 민사본안사건 최근 5년간 판결 선고기간이 지난 후 선고된 건수(2020~2024년)
(단위: 건)

연 도	구 분					
	제1심 (선고건수)	제1심 (5월 초과)	항소심 (선고건수)	항소심 (5월 초과)	상고심 (선고건수)	상고심 (5월 초과)
2020	557,710	285,476 (51.2%)	39,697	33,480 (84.3%)	10,645	981 (9.2%)
2021	529,777	278,018 (52.5%)	40,054	37,024 (92.5%)	11,282	929 (8.2%)
2022	478,137	239,240 (50.0%)	38,976	37,054 (95.1%)	14,743	4,518 (30.6%)
2023	475,102	232,070 (48.8%)	39,179	36,959 (94.3%)	11,779	950 (8.1%)
2024	473,422	239,499 (50.6%)	40,705	38,535 (94.7%)	12,400	786 (6.3%)
연평균	502,830	254,861 (50.7%)	39,722	36,610 (92.2%)	12,170	1,633 (13.4%)

자료: 대법원(사법연감, 2025. 5. 2. 전산자료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